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7.2.27(월) 조간	배포	2017.2.24(금)
책임자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강영수(02-2100-2850)		담당자	임형준 사무관(02-2100-2851)

제 목 : 「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」 입법예고

◇ 「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」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입법예고 실시함(17.2.27~4.10, 40일간)

- 동 제정안은 '16.9월부터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/F 및 '17.2.9일 개최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, '17.2.22일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입법예고를 추진하는 것임

<제정안의 주요내용>

- 자금중개사, 예탁결제원 등 중개·예탁기관은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·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함
- 투자자, 금융회사 등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금리를 세분화·구체화하여 공시토록 함
- 지표금리*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“관리대상 지표금리” 지정, 산출 중단 우려시 조치* 부과 등 관리를 강화함

* 코픽스, 코리보 등과 같이 금융계약상 채권·채무가액의 결정,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의 산정 및 성과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

* i) 지표금리 산출에 필요한 호가 등 제공 의무화, ii) 지표금리 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 발행 의무화, iii) 대체금리 발굴 및 관련 금융계약에 반영 등

1. 추진 배경

- 단기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규율이 미흡한 상황임
 -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어, 1일 단위로 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 등이 일부 공시되고 있으나, 시장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지 않고, 일부 사항들은 서로 상이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 상황임
 - 대출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, 법적 규율이 부재하여 행정지도나 일반 감독권 행사를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오음
- ➔ 이에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단기 금융시장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」 제정을 추진함

2. 주요 내용

1 (정의) 단기금융거래와 지표금리 등을 정의함

-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, 환매조건부매매(RP) 등의 금융거래*를 단기금융거래로 정의함
 - * 콜거래, 환매조건부매매(RP), 양도성예금증서(CD) 발행·매매, 기업어음증권(CP) 발행·매매, 전자단기사채(전단채) 발행·매매
- 콜거래, RP, CD, CP, 전단채 등 각 단기금융거래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의함
- 지표금리를 EU 벤치마크법*과 같이 금융계약상의 채권·채무가액의 결정, 금융상품의 거래 가격의 산정 및 성과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로서 일정 요건**을 충족하는 금리로 정의

* EU 벤치마크법(Benchmarks Regulation) : Regulation on indicis used as benchmark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contracts

** ①누구나 쉽게 해당 금리를 알 수 있을 것 ②주기적으로 산출될 것 ③기초자산의 가격이나 금융회사간 단기금융거래에서의 금리(호가포함), 조달금리 등에 기초할 것

② (자금중개회사) 자본시장법에서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및 행위 규제 등을 이관*하여 규정함

* 자본시장법상 '자금중개업' 관련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종금법에서 이관된 것이나 법체계상 부적합한 측면

③ (단기금융거래의 보고*) 금융회사의 일별·건별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중개·예탁기관이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·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함

* 단기금융거래의 일방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 한하며,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가 국가·한국은행인 경우는 제외

○ (보고주체)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, 장외RP·CD·CP·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, 장내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보고토록 함

- 단,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보고토록 함

○ (보고절차·방법) 자금중개회사, 예탁결제원 등은 보고 절차·방법 등을 정하고, 보고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토록 함

④ (단기금융 거래정보와 금리의 공시) 단기금융거래 유형별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와 금리를 세분화·구체화하여 공시함

○ (공시주체) 장외RP·CD·CP·전단채 관련은 예탁결제원이, 장내RP 관련은 거래소가, CD·CP·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, 코리보·단기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토록 함

* 공시내용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거래유형별·금리별로 신용등급, 거래 상대방의 유형, 잔존만기 등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하여 공시되도록 할 예정

-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리 공시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이 금융투자협회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

○ (공시절차) 예탁결제원, 거래소,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는 거래정보 및 금리를 산출·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인터넷에 공개토록 함

○ (콜거래·금리) 콜거래·콜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되,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함

⑤ (관리대상 지표금리)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“관리대상 지표금리”의 지정·해제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함

○ (지정) 금융거래(계약)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를 금융위가 “관리대상 지표금리”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

- 이 경우,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·공시 전반을 관리하는 지표금리 관리기관도 함께 지정토록 함

○ (해제) 관리대상 지표금리가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함

○ (점검)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기준·방법·절차의 적정성, 신뢰성을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점검할 수 있게 함

○ (신뢰성 확보 조치)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,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*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* ①새로운 정보제공 기관의 지정, ②지표금리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12개월간 의무적으로 제출, ③지표금리 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을 12개월간 의무적으로 발행, ④의무적 정보제공(②), 상품발행(③) 기간을 연장, ⑤관리대상 지표금리 공시의 절차방법의 변경 등

- 조치 부과시, 그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①지표금리의 산출 중단 등에 대비한 계획*을 마련하고 ②관련 금융계약에 그 계획을 반영토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함

* 지표금리 중단시 당해 지표금리를 대체하는 다른 (지표)금리의 지정, 대체금리가 금융계약에 적용되는 기준 및 절차 등

⑥ (단기금융시장의 위험관리) 금융회사는 단기금융거래시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한 기준*을 준수하여야 함

* 콜거래를 통한 자금차입 및 자금대여 한도의 제한, RP대상 증권의 담보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등(→세부기준은 감독규정으로 위임)

- 아울러, 금융위·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·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년을 초과하는 콜·RP·CD·CP·전단채 거래관련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*할 수 있도록 함

*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은 자금중개회사, 예탁결제원 등 예탁·중개기관에 한정하고 해당 자료에서 거래당사자 식별정보는 제외

⑦ (감독·검사·제재) 자금중개회사, 예탁결제원, 금융투자협회, 은행연합회,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, 검사, 제재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

3. 기대 효과

①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위,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며,

- 단기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됨

②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충분히,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③ 지표금리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표금리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④ 그간 행정지도나 일반 감독권에 의존해 온 단기금융시장의 규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4. 향후 일정

- 입법예고(2.27~4.10, 40일간), 규제·법제심사(4~5월)를 거쳐 차관·국무회의(5~6월) 후 6월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임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*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